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포항시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일련번호	소 관	건 명	처 분 요 구		
			처분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1	◎◎◎◎과	□□지구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
2	◎◎◎◎과	□□□4 □□산업단지 □□□□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3	◎ ◎ 과	□□ □□ □□□□(대2-6)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4	◎ ◎ 과	포항시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5	◎◎◎◎과	□□ □□□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	
6	◎◎◎◎과 등 4개과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
7	북구 ◎◎◎◎과	□□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일련번호	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구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2017.7.12. ◪◪◪◪◪합자회사 ☆☆☆과 공사계약(2,042백만원)을 맺고, 2017.7.18. 착공하여 2019..1.8. 준공예정으로 **□□지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표준품셈에 따르면 블록식 보강토 옹벽(블록식) 시공품은 2015

년 개정되면서 블록쌓기품과 뒷채움 및 다짐으로 구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블록식 보강토 옹벽 2,955㎡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된 건설표준품셈(㎡당 61,043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고가의 다짐비가 포함된 신기술품(㎡당 102,153원)을 적용하여 **사업비 107,125천원**(제경비 포함)을 추가 소요되게 한 사실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전·답·임야와 같은 경우에는 잔여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 잔여지를 매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업 예정부지인 포항시 북구 ￥￥읍 √√리 ㆍㆍㆍ-ㆍ(답) 3,038㎡를 협의 매수하고 남은 ♤♤♤-♤(답) 1,848㎡는 잔여지 매수대상이 아님에도, 포항시 ◎◎◎◎과에서는 위 사업 편입부지 토지소유자 ∀∀∀ 외 2명이 영농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신청한 잔여지 매수요청을 면밀한 검토 없이 수용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추가 매입한 잔여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① 앞으로는 공사원가 계상 및 보상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4 □□산업단지 □□□□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2018.2.1. ◪◪◪◪◪㈜ ☆☆☆와 공사계약(7,942백만원)을 맺고, 2018.2.6. 착공하여 2020.2.5. 준공예정으로 **□□□4 □□산업단지 □□□□ 연결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연약지반에서 절·성토는 여유부지가 있을 경우 흙의 안식각 이상으

로 시공하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사면 안정화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단지 예정부지 내 절취사면으로 흙의 안식각(1:3)에 맞게 절취가 가능한데도 연결로A 구간 NO. 9+10 ~ NO.14+10 지점에 고가의 쏘일네일링공법[1](202공)을 반영하여 사업비 **147,863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다.

또한, 가설건축물로 계획된 현장사무실 500㎡ 및 창고 380㎡를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사무실 230㎡ 및 창고 180㎡로 설치함에 따라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정한 조치 미이행으로 사업비 **44,347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되게 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192,21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되게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192,210천원은「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쏘일네일링 공법은 굴착면의 일부토사를 하나의 큰 보강체로 구성함으로써 보강구조체 배면의 토압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외적으로는 중력식 흙막이 구조체의 개념과 같은 원리로 배면토압을 지탱하게되며 내적으로 지중에 설치되는 보강재인 네일(이형철근)과 네일주변의 지반과의 상호 작용으로 국부적인 저항 시스템을 형성하는 시공방법이다

일련번호	3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대2-6)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2016.11.3. ◪◪◪◪◪◪㈜ ☆☆☆과 공사계약(3,865백만원)을 맺고, 2016.11.10. 착공하여 2020.2.18. 준공예정으로 **□□ □□ □□□□(대2-6)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깍기부 토사 및 암구간 녹화공법으로 시공되는 녹생토는 풍화·마사토 구간에는 T=5cm, 풍화암 구간은 T=10cm로 시공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깍기부 토사구간에 고가의 녹생토 암절개면보호공 T=10cm를 적용하여 **사업비 64,02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으며,

연약지반부(L=480m B=31m)에 재하성토(H=1.5m)된 32,000㎥토량이 평균 12cm 처짐이 발생하여 제거토량에서 1,785㎥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적정한 조치 미이행으로 사업비 **사업비 6,38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되게 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70,4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되게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70,400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포항시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포항시 □□□□□□ 신축공사”를 2018. 9. 3. ‘㈜◪◪◪◪◪◪ ☆☆☆’과 계약하고 2019. 3. 5.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1. 부적격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및 시공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에 따르면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 □□□□□□ 신축공사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포항시 ◎◎과에서는 계약상대자인 ‘㈜◪◪◪◪

◪◪ ☆☆☆’가 2018. 9. 6 제출한 ‘건축공사 착공계’에 기술등급이 부적합한 건축분야 초급 기술자로서 시공관리업무 종사경력이 미달되는 ‘전우승’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음에도 교체 등의 조치 없이 2018. 11. 9. 감사일 현재까지 부적격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를 하고 있다.

2. 사업추진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포항시 ◎◎과에서는 알루미늄 복합패널 및 시트패널 설치에 하지철물 설치비용을 중복 반영하여 공사비 47,615천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또한, 현장설치도 견적가인 스톤코트 외부단열 사급자재를 재료비로 반영

하지 않고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나누어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제경비가 포함되어 공사비 1,241천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부적격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및 총 사업비 48,856천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부적격 건설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로 교체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2012.12.3. ◪◪◪◪㈜ ☆☆☆와 공사계약(17,640백만원)을 맺고, 2012.12.3. 착공하여 2019.6.30. 준공예정으로 **□□ □□□ □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 □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시설기준에 따라 80년 빈도에 맞춰 하천환경정비 L=8.24km를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포항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6.10.5. 태풍 “차바”로 인해 하천 상류인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에 강우량 231mm(최대 시우량 68.5)를 기록하였으며, 3시간 강우분석 결과 200년 빈도 강우강도 146.4mm 보다 큰 163mm 강우량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사업구간 내 기시공한 저수호안 L=2,900m 고수호안 L=1,510m 경계석 L=6,200m 등이 유실되는 수해피해를 입었으며,

2018.10.5.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하천 상류 갈평리에 80년 빈도 일 강우량 335.8mm보다 큰 일 강우량 367mm를 기록하였으며, 호우로 인해 저수호안 기초 유실과 고수부지 식재를 위한 성토흙 및 초화류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태풍피해구간 피해원인 및 보강과 관련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 ㈜♤♤엔지니어링(수자원 분야 기술지원 기술자 ∀∀∀)에서는 **저수호안은** 80년 빈도의 지속강우량을 넘어선 강우시 유속 및 소류력이 증가하고, 특히 NO.4+240~NO.4+560 구간은 통수단면 부족 및 급격한 낙차로 인한 블록 기초부의 지속적인 침식작용 발생하며, **고수부지는** 유속의 증가에 따라 침식 및 세굴이 발생하였으며 저수호안의 보강이 시급하고 고수부지에는 식재면적 및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수해피해구간은 자갈층 하상 및 건천 지역에 맞춰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또한 생육여건이 불리한 초화류의 식재는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위 수해피해구역 내 잔여 계약물량 **(파고라 등 휴게시설, 자전거 거치대 등 편의시설, 시설안내판 등 안내시설, 체력단련기구와 물억새 등 초화류 식재) 사업비 1,078,570천원(관급 포함)을**

감액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1,078,570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하시고, 재해에 취약한 저수호안 및 시설물 등은 보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등 4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남구청 ◎◎◎◎과

내 용

포항시 ◎◎◎◎과, ◎◎◎◎과, ◎◎◎◎◎◎◎◎과, 남구청 ◎◎◎◎과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분 □□지구 □□□□공간 조성사업(주차장)' 등 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1.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및 승인절차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 ◎◎◎◎◎◎◎◎과, 남구청 ◎◎◎◎과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017년분 □□지구 □□□□공간 조성사업(주차장)' 등 3

건의 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임에도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지시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과에서 추진중인 '□□□ 1지구 □□재해예방사업'은 품질시험계획 서류만 제출했을 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 및 승인한 사실이 없다.

〔표2〕 품질시험계획수립 부적정 등 현황 "생략"

2. 건설공사 품질기술자 미배치, 시험실(장비) 미설치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건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시행규칙 별표5>

공사분류	공사규모	시험장비	시험실 면 적	품질기술자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이상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장비	50㎡이상	특급1명, 중급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00~1000억원, 연면적 3만~5만㎡이상		〃	고급1명, 중급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500억원, 연면적5천~3만㎡이상		20㎡이상	중급1명, 초급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2~100억원		〃	초급1명 이상

그런데도, 포항시 해양사업과, ◎◎◎◎◎◎◎◎과, 남구청 ◎◎◎◎과에서는 '2017년분 □□지구 □□□□공간 조성사업(주차장)'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품질기술자 배치, 시험실(장비) 설치 등 품질관리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과에서 추진중인 '□□□ 1지구 □□재해예방사업'은 품질기술자는 배치하였으나 시험실(장비) 미설치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장·단기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확보, 목적물의 성능

보장과 내구성 확보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관련법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포항시 ◎◎◎◎과, ◎◎◎◎과, ◎◎◎◎◎◎◎◎과, 남구청 ◎◎◎◎과에서는 품질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①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북구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북구 ◎◎◎◎과

내 용

포항시 북구 ◎◎◎◎과에서는 2018.7.30. ◪◪◪◪㈜ ☆☆☆와 공사계약(1,265백만원)을 맺고, 2018.8.2. 착공하여 2018.12.14. 준공예정으로 **□□ □□□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공사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포항시 북구 ◎◎◎◎과에서는 지진복구사업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접속슬라브 하부에 시공이 불필요한 고가의 바닥복원공(T=2cm) 120공

을 반영하여 **사업비 64,951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다

또한, 교량상부 슬라브 단면보강 및 교량받침 보수를 위한 교량점검차 사용일수(50일)를 계상하면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성곡2교 교량점검차 사용일수 25일을 추가 반영하여 **사업비 66,071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131,022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되게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131,022천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하시고, 앞으로는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